

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(행정문화국 교육지원과)

2021. 2. 19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4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2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2. 8.

2. 제안이유

중·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 대상, 금액, 절차에 관한 규정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라. 환수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마.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」 폐지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, 제27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본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 예산합의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0. 12. 28. ~ 2021. 1. 18.(별도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에 명시된 입학준비금과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」는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지원금 조례」를 새롭게 제정하여
- 교복지원에만 한정된 입학지원금을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학교, 고등학교,

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며,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와 금액, 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학지원금 지원절차로, 입학 준비금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복지원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토록 규정하였음.

다.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 중,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포함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지원금으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

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,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.

다만 중복지원 등 지원 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관 계 법 령

교육기본법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